



안휘 한웨이 환경 과학기술 유한공사 VS 허페이 이후 환경 보전 설비 유한공사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46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안후이성 통링시 중급인민 법원	사건번호	(2014)铜中民三初字第9号
판결 일자	2013년 4월 13일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인용 (권리자 승)
원고	안후이 한웨이 환경 과학기술 유한공사		
피고	허페이 이후 환경 보호 설비 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영업비밀	환경 보호 관련 설비 기술비밀		
키워드 (Keyword)	소송보전(诉讼保全), 재산보전(财产保全), 동결(冻结), 담보(担保), 침해 행위 정지(停止侵权行为)		

02 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민법원에 인민폐 5만 위엔 상당의 재산 보전조치와 권리침해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면서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고	⇒ ←	피고
재산보전보치 침해행위의 정지	(나타나지 않음)	

04 판결 요지

원고의 재산보전 신청과 권리침해행위 정지 청구를 인용함

05 Key Point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에서 『인민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행위나 기타 원인으로,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거나 당사자에게 기타 손해가 조성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거나 혹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보전조치를 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며, 재산보전 조치와 침해행위 금지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다.

한국에서 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침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침해행위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에 상응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하고 별도 심리하는데 반해, 위의 중국 판결은 하나의 결정문으로 결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가압류 결정은 서면심리로 이루어지지만, ‘침해행위 정지 가처분’의 경우는 심문기일을 열고 본안 사건에 준하는 정도의 심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본 사건 결정문을 보면, 깊이 있는 심리 없이 간단하게 침해행위 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보인다.
